#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중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0호(2000.10.28)-

보건복지부는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18호, 2000. 4 18)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 8. 8)의 개정으로 특수영양식품의 품목분류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 □ 특수영양식품 재분류

|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
| 12. 특수영양식품 | 12. 특수영양식품 | |
| 12-1 조제유류 | 12-1 조제유류 | |
| 12-2 이유식류 | 12-2 영아용 조제식 | |
| | 12-3 성장기용 조제식 | |
| | 12-4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 |
| | 12-5 기타 영·유아식 | |
| 12-3 영양보충용식품 | 12-6 영양보충용식품 | |
| 12-4 특정용도식품 | 12-7 환자용등식품 | |
| 12-5 식이섬유가공식품 | 12-8 식사대용식품 | ○ 식사대용식품은 식사대용식품과 체중조절용식품으로 재분류 |

* 영양보충용식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식이섬유가공식품이 영양보충용식품으로 분류. 다만, 식이섬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식이섬유 1회 섭취량이 2.5g 이상

** 저열량식품은 특정용도식품에 포함되던 것으로 개정공전에서는 삭제됨.

## □ 심의대상식품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0(2000. 10. 28)호에 의거 한국식품공업협회의 특수영양식품 광고심의대상식품이 영양보충용식품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으로 조정
-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 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외한 식품은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에서 실시

2) 한국식품공업협회 심의대상식품중 식

이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영양보충용식품은 식이섬유 또는 이에 단백질등의 필수 영양소를 1종 이상 보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1회에 식이섬유를 2.5g이상 섭취토록 규정하고 있고 따로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의 주원료로 식이섬유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식품공전 개정전의 식이섬유가공식품 식이섬유 10% 이상 함유) 위의 규정을 충족치 못할 경우 영양보충용식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 빵류, 캔디류 등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보충한 식품도 영양보충용식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주원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성분배합기준이상의 원재료 또는 각각의 식품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함(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36호, 2000. 7. 28).

3) 또한 식이섬유 공급이 주된 목적일 경우에는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하여 사용한 식이섬유의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 글루코만난 20%, 갈락토만난 30% 등

4) 체중조절용식품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가감하여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필요한 사람의 한끼니를 대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식품의 열량을 조절하면 제조가 가능하나 다음의 11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을 반드시 표시량이상 함유하여야 하므로 일반식품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비타민 A, $B_1$, $B_2$, $B_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E, 칼슘, 철, 아연

5) 따라서 법 개정전에 광고사전심의대상이던 식유섬유가공식품은 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으로 분류되어 식이섬유를 1회 2.5g이상 섭취하도록 제조한 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이섬유를 2.5g이하로 함유하거나 필요한 열량을 가감하여 한끼니의 식사를 대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체중조절용식품)이 광고사전심의대상식품임.

## □ 대상식품의 기준·규격

### 1. 영양보충용식품(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

1) 정 의

일상의 식이에서 부족한 영양성분 중 특히 식이섬유를 보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분말, 과립, 고형, 편상, 페이스트상, 액상, 정제, 캅셀 등의 식품.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

2) 원료구비요건

①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효소는 분해되기 어려운 난소화성의 고분자 화합물을 분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함.

②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은 부원료로서 최소량(5%이하를 사용하되 일일 섭취량이 6g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조·가공기준

① 혼합, 충전, 타정시 사용하는 원료의 특성에 따른 열, 공기접촉에 의한 산화, 열화,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 필요한 경우 성분간의 접촉에 의한 변화방지를 위해 성분을 나누어 정제, 캅셀 등으로 제형화할 수 있음.

③ 식이섬유공급이 주된 목적인 경우 1회 섭취량당 2.5g이상이어야 함.

4) 규 격

①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② 수분(%) : 10.0 이하(분말, 건조고형제품에 한함)

③ 조단백질(g), 아미노산류(g), 지방산류(g), 식이섬유(g), 비타민 A(㎍ RE), 비타민 $B_1$(㎎), 비타민 $B_2$(㎎), 비타민 $B_6$(㎎), 니코틴산(㎎ NE),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_{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dℓ-α-TE), 비타민 $K_1$(㎍), 비오틴(㎍), 콜린(㎎),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철(㎎), 마그네슘(㎎), 요오

드(㎍), 구리(㎎), 아연(㎎), 망간(㎎), 셀렌(㎍), 크롬(㎍), 몰리브덴(㎍) : 표시량 이상

④ 세균수 : 1㎖당 100이하(액상제품에 한함)

⑤ 대장균군 : 음성

⑥ 붕해시험 : 적합(캅셀 또는 정제제품에 한함. 다만, 씹어먹는 것은 제외)

⑦ 납(㎎/㎏) : 3.0이하(우골분, 패각분 등 소성칼슘을 사용한 제품에 한함)

### 2. 체중조절용식품

1) 정 의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하루에 요구되는 열량을 가감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분말, 액상, 페이스트상, 편상, 덩어리 등의 식용에 적합한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

2) 원료의 구비요건

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은 부원료로서 최소량(5%이하를 사용하되 일일 섭취량이 6g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조·가공기준

① 지정하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이를 합하여 한끼용의 식사로 간주할 수 있음.

② 지방에서 유래하는 열량은 총 열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③ 체중 감소용 제품의 경우 요구되는 영양소 중 탄수화물과 지질의 함량을 조절하여 열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④ 체중 증가용 제품의 경우 요구되는 영양소 중 지질의 함량을 단위당 칼로리의 양을 높일 수 있음.

4) 규 격

① 성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② 수분(%) : 10.0% 이하(분말, 과립,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함)

③ 조단백질(g) : 표시량이상이어야 함.

④ 비타민류 : 표시량이상이어야 함. (단, 비타민 A(㎍), $B_1$(㎎), $B_2$(㎎), $B_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E(㎎)에 한하여 적용함)

⑤ 무기질류 : 표시량이상이어야 함.(단, 칼슘(㎎), 철(㎎), 아연(㎎)에 한하여 적용함)

⑥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함.

## □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

제정 1997. 2.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 9호
개정 2000. 10.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전심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물"이라 함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젼, 전단, 제품설명서, 옥외광고, 교통수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한 문자, 숫자, 도형 등 일체의 것으로서 표시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광고사전심의"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식품을 광고하기 전에 당해 광고물 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받는 것을 말한다.
3. "전단"이라 함은 식품의 광고의 내용을 적어 공중에게 배포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식품 및 심의기구)** ①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및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에 각각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광고물은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에 설치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 및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에 대한 광

고물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명, 제품명, 가격만을 광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광고매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신문·잡지·전단·제품설명서·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한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식품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각 협회장이 10인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업계의 대표가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②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협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6조(광고심의필 표시)**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을 광고할 때에는 "광고심의필"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②"광고심의필"문구의 크기, 위치, 기타 세부사항은 각 협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7조(심의수수료등)** ①심의수수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세부시행규정)** 각 협회는 심의기준,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수수료, 심의처리기간, 기타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1997. 2. 17]

이 고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전단 또는 제품설명서에 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비타민·무기질(칼슘을 제외한다)·아미노산·지방산을 주원료로 한 영양보충용식품에 대한 전단 또는 제품설명서에 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